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21136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1.06.1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06.10]

[www.homesfood.co.kr]

[비비당]

정 보 공 개 서

[(주)홈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홈푸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87, 6층 604호(가락동, 동서울빌딩)

대표 전화번호 : 02-2203-9455

대표 팩스번호 : 0505-310-9455

가맹사업담당부서 : 02-2203-9455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4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7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1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2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8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0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2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4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36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홈스푸드	비비당 외1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87, 6층 604호(가락동, 동서울빌딩)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3.05.08.	2013.05.16.	최성식	02-2203-9455	0505-310-9455
	법인등록번호	110111-5130078	사업자등록번호	230-81-0034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최성식	비비당 외1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87, 6층 604호(가락동, 동서울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성식	02-2203-9455	0505-310-945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이하 “비비당”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비비당	-
상 호	비비당 OO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43류) 출원번호 : 40-2024-0177739 출원일자 : 2024.09.26
		(35류) 출원번호 : 4020230211060(2023.11.21) 등록번호 : 4022289740000(2024.08.01)

기타 서비스표			
---------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5,108,292	3,686,597	1,421,695	8,428,602	97,640	61,109
2023년	5,357,248	4,264,021	1,093,227	8,635,432	-159,078	-295,968
2024년	4,855,968	4,344,549	511,419	7,883,222	-451,498	-581,808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쿡마스터가 2024년 12월부터 비비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비당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재직 회사 및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최성식	대표이사	1999.10.26.~2013.07.21.	(주)이마트 선임과장	상품개발 바이어
			2013.05.08.~현재	(주)홈푸드 대표	회사업무 총괄
			2017.09~현재	한국HMR협회 이사	
			2020.01.05.~현재	(주)솔루밀 대표	대표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	1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홈푸드	가맹사업경영	2013.05.08.~현재	국선생(등록번호 20130067)이라는 브랜드의 기타도소매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여부 및 등록일자	등록번호 및 출원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사용기간)
	제품 사용 및 대가 수수	출원일자 : 2024.09.26	(43류)출원번호 : 40-2024-0177739	최성식	-
	제품 사용 및 대가 수수	출원일자 : 2023.11.21. 등록일자: 2024.08.01	(35류) 출원번호 : 40-2023-0211060 등록번호 : 40-2228974-0000	최성식	존속기간: 2031.11.19. (허용기간): 가맹사업 종료 시까지

- * 당사는 상표권 소유자로부터 '비비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사용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출원중인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비비당] 가맹사업 현황

1. [비비당]을 시작한 날 : 2021년 07월 14일

※ 당사의 쿡마스터는 2024년 12월부터 비비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1. 05.27)

2. [비비당]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홈스푸드	쿡마스터 (cook master)	최성식	2021.07. ~2024.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45, 8층 (가락동, 리노타운)
(주)홈스푸드	비비당	최성식	2024.12. ~ 현재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87, 6층 604호 (가락동, 동서울빌딩)

3. [비비당]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비비당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비빔밥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비비당]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	2	1	2	2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3	2	1	2	2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위 2022년 2023년 가맹점/직영점 수는 비비당으로 변경되기 전 쿡마스터 가맹점/직영점 수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비비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당사의 비비당은 2024년 가맹점이 없습니다.

5. 바로 전 3년간 [비비당] 가맹점 수

(단위: 개)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년	2	1	1	-	-	2
2023년	2	-	-	-	-	2
2024년	2	-	1	1	-	0

6. [비비당]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명의변경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홈푸드	국선생	20130067	기타 소도매	64/1	55/1	44/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매출액(직영점 매출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평균 매출액		연평균 매출액(상한)		연평균 매출액(하한)		
		연매출액	3.3㎡ 당	상한	3.3㎡ 당	하한	3.3㎡ 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8. [비비당]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일)
2024년	-	-

▶ 당사의 비비당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비비당] 가맹점을 관리하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비비당]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 8. 1)]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매체)	기간	지출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024.01.01. ~12.31.	-	-	-	-
광고	온라인 등	소계	-	-	-	-
판촉			-	-	-	-

▶ 2024년 12월부터 쿡마스터가 비비당으로 변경되어 비비당에 사용한 광고 및 판촉비용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 및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가맹사업본부	지점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031-206-7685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우리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매장 직접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인터넷뱅킹 이용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인터넷뱅킹() 접속 → ③ (기업뱅킹)클릭 → ④ 기업지원서비스(가맹금 예치제)클릭 → ⑤ (가맹점사업자 서비스페이지 바로 가기)클릭 → ⑥ 가맹금예치신청서 내용 기입 후 예치가맹금 이체
우리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우리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통장 개설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개인인감 증명서 ⑤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우리은행에서는 가맹금 예치에 관한 업무를 매장 방문으로 이루어지며 우리은행 계좌가 있으신 사업자는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맹금을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피해보상보험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비비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16,500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영업개시 이전 계약해지	· 영업개시 전 : 교육 및 인력.정보 제공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 영업개시 후 : 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반환하지 않음
교육비	5,500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교육 시작 1일 전에 계약해지	·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 가맹금, 물품대금 등의 미지급 - 영업표지 철거 기타 원상회복의무 등 계약 종료 후 조치 미이행	계약의 기간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비고
합계	18,500	
가맹비	11,0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5,5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2,000	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IV. 1. 7)]을 참고하십시오.

(10평 기준)(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10평(33.3㎡)				
총계		39,600	3,960			*현장 실측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협력업체	22,000	2,200	가맹계약체결시 별도계약	공사착수 전 계약취소	실측 후 산정
간판 및 사인물	협력업체	5,500	550	가맹계약체결시 별도계약	제작 전 계약취소	실측 후 산정
설비 및 집기	협력업체	8,800	880	가맹계약체결시 별도계약	제작 전 계약취소	실측 후 산정
의/탁자 및 가구	협력업체	2,200	220	가맹계약체결시 별도계약	제작 전 계약취소	실측 후 산정
POS/ 키오스크	협력업체	임대		가맹계약체결시 별도계약	입고 전 계약취소	랜탈로 진행 별도 구매도 가능
기타 소모품	가맹본부/ 협력업체	1,100		가맹계약체결시 별도계약	제작 전 계약취소	
별도공사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비용)	외부공사, 파사드,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컴퓨터, 테라스 등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 위 표의 금액은 오픈하고자 하는 매장 환경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 실측 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 구매하여야 합니다. 직접 설치, 구매시 설계 및 검수 대가로 3.3㎡ 기준(매장 면적 33㎡ 이하 점포의 경우 33㎡를 기준으로 함)으로 55만원(부가세 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품목 일부를 직접 설치, 구매할 경우 계약체결 시 당사와 별도 협의 합니다. 지방의 경우 교통비 및 출장비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 점포 미보유 시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점포 보유 시 : 최소 점포 기준 26.4 m² 이상 /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 당사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드리고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의 주체는 가맹희망자입니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보건증 소지자)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8세 이상일 것 (보건증 소지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비비당]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상기 내역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 9.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가맹본부	매출액의 1.65%	매월 익월 10일	매월 말일정산
모바일 상품권	제공업체	판매수수료100%		하단설명
지류 상품권	가맹본부	수수료없음		하단설명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가맹본부	- BI · CI 개발 및 투자 등 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 가 부담 - 귀하의 가맹점 내의 간판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비 용은 협의하여 부담	영업표지 변경 시	설치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III.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POS/키오스크 사용료	협력업체	업체지정 금액	업체 지정일	사용료로 소요
인테리어,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보수사항 발생 시 산정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 한 나머지)	시공시작 전일까지	미시설/비용소요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 한 나머지	-	[VII. 1.]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

① 지류상품권, 모바일실물교환권, 모바일금액상품권

가맹본부는 고객의 결제수단을 다각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진을 도모하는 등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모바일실물교환권, 모바일금액상품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류상품권>

상품권 발행(본사) ▶ 고객 결제 ▶ 가맹본부로 상품권제출 ▶ 해당대금 입금

<모바일실물교환권, 모바일금액상품권>

모바일실물교환권, 금액상품권 판매 ▶ 고객 결제 ▶ 해당대금 입금
(온라인스토어 등 온라인쇼핑몰) (점포 내승인) (수수료제외)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단위:천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해당없음 : 당사의 비비당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당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상품 및 서비스의 취급 여부, 매뉴얼 준수 여부, 매출현황, 서비스 상태, 각종 설비 관리, 회계장부 열람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맹점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가 가맹점의 점검이나 기타 점포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귀하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필요에 의하여 점포를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용은 해당 사유를 감안하여 귀하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획득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권리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BI, CI 개발 및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귀하의 가맹점 내의 간판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비용은 귀하와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미리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 및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①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IV. 1. 1])에 따른 가맹비의 50%를 감면합니다. 다만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 초래된 행정적 실비, 소정의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②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새롭게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IV. 1. 1])에 따른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④ 영업양수인과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영업양도일 이전까지 당사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양도가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귀하는 지체 없이 당사의 상호, 간판, 이미지물(점포 내·외부 POP 일체)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과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 등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당사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집기, 시설, 설비 등의 반환을 당사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물품의 오. 훼손,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일부를 당사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메뉴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가맹점을 가도 같은 메뉴를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에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비비당]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해당없음 : 당사의 비비당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비비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직전연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비비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연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2) 당사는 [비비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연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V. 3.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의 내용과 동일	당사에서 제시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브랜드의 통일성 및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에서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상품·서비스 공급중단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지정메뉴 판매 시 원.부재료에 대한 대표품질표시 서류를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원 라벨지는 별도로 관리·보관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개점 전 지정한 메뉴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 요청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기타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상품·서비스 공급중단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다음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상품명	권장가격 (단위: 원)	상품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샐러드 비빔밥	6,900	스팸산채비빔밥	7,500	개별통지 (ERP) 또는 홈페이지 공지	2024년 12월 기준
닭가슴살 비빔밥	7,500	참치산채비빔밥	7,500		
스팸샐러드비빔밥	7,500	오리고기산채비빔밥	8,500		
참치샐러드비빔밥	7,500	간장불고기산채비빔밥	8,500		
오리고기샐러드비빔밥	8,500	제육산채비빔밥	8,500		
간장불고기샐러드비빔밥	8,500	닭갈비산채비빔밥	8,500		
제육샐러드비빔밥	8,500	쭈꾸미산채비빔밥	8,500		
닭갈비샐러드비빔밥	8,500	연어샐러드비빔밥	9,000		
쭈꾸미샐러드비빔밥	8,500	육회비빔밥	11,000		
산채비빔밥	6,900	꼬막비빔밥	11,000		
닭가슴살 산채 비빔밥	7,500				

- ▶ 메뉴구성과 권장가격은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내의 다른 점포로의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전희망 점포가 기존 점포 승인 당시의 승인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조건 없이 승인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비빔밥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비비당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 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200m	계약체결 시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에서 설정한 영업거점지역 외에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 제시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당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
- 5) 당사는 비비당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주)솔루밀은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	0%	0%	-

※ 당사의 비비당은 가맹점/직영점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	-

※ 당사의 비비당은 가맹점/직영점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및 갱신 기간

[비비당]의 최초 가맹계약기간은 2년, 재계약 또는 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로열티, 원·부재료 공급에 따른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1조 제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브랜드와 상품·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영지도,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 기법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비비당]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제42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로열티 등)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POS프로그램 사용의 임의중단, 매출등록	

누락, 허위 등록 및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 위반, 브랜드 품위 훼손, 경영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장 위치변경을 한 경우	
○ 가맹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개량,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원·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 또는 고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 및 상품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 및 경고를 받고 7일 이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2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 [즉시 해지 사유]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영업을 양도, 임대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체결된 영업양도 등의 계약은 그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양도일(또는 영업임대일, 담보제공일. 이하 같다)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등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양도 등의 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상품대금이나 로열티 등 금전적인 미지급금 등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본부는 전항의 승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며, 가맹본부가 이 기간 중에 이유를 적시하여 거절하지 않으면 영업양도 등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양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양도 승인조건으로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⑥ 영업양수인, 영업임차인에 대하여는 가맹계약서 제15조 제1항에 따른 최초가맹비의 50%를 감면합니다. 다만 양도 등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⑦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맹비(1,100만원, VAT포함), 교육비(550만원, VAT포함), 보증금 200만원(VAT없음)을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⑧ 영업양수인과 가맹점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영업양도일 이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양도가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①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상속인에 대해서는 최초가맹금을 면제합니다. 다만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맹본부 승인 시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 -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용은 쌍방 간 협의하여 상속인이 부담함	교육이수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가맹본부 승인 시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하에 대리경영을 시킬 수 있으며,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이수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비비당]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비빔밥을 판매하는 업종 ○ 동일업종의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02-2203-9455)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월 26일(2월은 24일) 이상 영업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3일 이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으며, 영업시간(09:00~21:00)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특성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일정기간 휴업을 하거나 영업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휴업하기 7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점주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자율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① 당사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당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서비스 취급 여부, 매뉴얼 준수, 매출 현황, 서비스 상태, 각종 설비 관리, 회계장부 열람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는 당사가 가맹점의 점검이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운영시간 중 언제든지 귀하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비비당]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단위 광고.판촉	브랜드광고	50%	50%	광고 세부계획 →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비 분담 내역 통지 →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분담금 납입 → 광고 시행	
	브랜드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75%	25%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음		
지역단위 광고.판촉	매출활성화	없음	100%	해당 지역의 가맹점사업자들끼리 협의하여 분담	
단독광고	매출활성화	없음	100%	단독광고를 실시하는 가맹점사업자 부담	

-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판촉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촉의 경우에는 찬성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광고와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 * 할인행사의 경우 전국단위 광고.판촉의 브랜드 광고에 준하여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50:50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귀하가 단독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판촉활동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광고·판촉 활동 집행내역의 통보

당사는 사업연도 중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한 광고·판촉을 시행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가 세 부 산출근거가 포함된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열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판촉활동(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판촉활동을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판촉활동으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귀하 및 귀하의 직원은 가맹계약의 성립시점부터 계약종료 후에도 당사가 대여·제공하는 운영매뉴얼, 영업방식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을 당사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인쇄, 복사, 대여, 공개, 열람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해지·종료 시 가맹계약서 제43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일금오십만원(₩500,000)의 지연 손해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 일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 및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일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 일금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44조에 따른 영업비밀유지의무 또는 경쟁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 일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4조 “물품의 조달과 관리”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금 일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⑥ 가맹본부의 지급 요청일에 가맹점사업자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금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맹점사업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45]일 정도로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가맹문의/ 상담	- 전화, 홈페이지 문의 접수 - 희망 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 담당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1일	
점포개발	-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 - 입지 지역분석 및 점포 확정	3일~5일	
최종협의	- 가맹점 개설승인 - 가맹계약서 제공	1일	
가맹계약	- 가맹계약 체결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가맹 계약서 제공 후 15일째부터 가능	[IV. 1. 3]] 참조
인테리어 공사	- 점포실측, 견적 산출 -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입고	10일	[IV. 1. 4]] 참조
인허가 취득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신청	3일	
교육훈련	- 점포운영교육 실시 (매장 인테리어 공사 시 진행)	7일	
점포 개설	- 초도상품 입고 및 가맹점 가오픈 - 영업개시	2일	자체 비용 소요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사정, 교육이수 정도, 가맹점포의 여건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및 가맹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 연락 (방문/전화 등)	귀하가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2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3	자문확인서 수령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거래사/변호사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4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일 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1)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2)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용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 점 포 의 시설, 장비, 인 테 리 어 등의 노후 화가 객관 적으로 인 정되는 경 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 함으로 인 하여 가맹 사업의 통 일성을 유 지하기 어 렵거나 정 상적인 영 업에 현저 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 한 실내건축공사 에 소요되는 일 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 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 시함에 따라 소 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 장 또는 이전 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 경개선 : 20% ○ 점포의 확 장 또는 이전 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 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 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 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점 포 환 경 개 선 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가맹 본부 의 책임 없는 사유 로 계약이 종료(계약 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 본부 부담 액 중 잔 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 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함에 있어 개점행사시 판촉인원을 파견하고 전단지 및 기념품의 판촉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 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02-2203-9455)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 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사업팀 (02-2203-9455)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비비당]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비비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메뉴 제조방법 및 개점 전에 필요한 제반 교육	현장실습교육 (지정교육장)	개점 전	필수 교육
신메뉴 교육	메뉴 제조방법	집체교육 또는 S/V를 통한 개별교육	신메뉴 출시	필수 교육
정기/부정기 교육	운영방침 및 판매/서비스 기법	집체교육 또는 S/V를 통한 개별교육	점주요청 시	필수 교육

* 당사의 신메뉴 개발은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등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당사의 신메뉴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비비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5일(45시간) (점주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5,500(VAT 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신메뉴 교육	메뉴에 따라 상이	실비	교통비 · 식비 등의 제반비용은 귀하 부담
정기/부정기 교육	필요에 따라 협의	실비	교통비 · 식비 등의 제반비용은 귀하 부담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당사에서 정한 교육 ·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재교육 또는 가맹점 개점승인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신메뉴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해당 메뉴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는 영업지원의 중단 및 해지

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귀하의 가맹점 매출액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당사는 비비당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2-2203-94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비비당 필수 주방기기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규격 및 기기내역은 매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첨2

비비당 원.부재료 리스트

1. 1) 물품구입 및 입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상기의 리스트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3

2024년 2023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2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5

< 가맹금예치신청서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6

< 인근 가맹점 리스트 >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당사의 가맹점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가맹점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절취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증 (가맹본부 보관용)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가맹본부: 주식회사 홈스푸드 대표 최 성 식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서명 또는 (인)

별첨7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수령확인증 (가맹희망자 보관용)

본인은『국선생』으로부터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및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 년 월 일
2. 정보공개서를 마지막으로 등록한 날 : 년 월 일
3.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목차 : ①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③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④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⑥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⑦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⑧교육·훈련프로그램
4.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5.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 (주)홈스푸드 (인)	수령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	-------------------------

가맹거래사 확인 및 자문 : 가맹거래사 (인)

------(절취선)-----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수령확인증 (가맹본부 보관용)

본인은『국선생』으로부터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및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 년 월 일
2. 정보공개서를 마지막으로 등록한 날 : 년 월 일
3.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목차 : ①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③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④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⑥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⑦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⑧교육·훈련프로그램
4.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5.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 (주)홈스푸드 (인)	수령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	-------------------------

가맹거래사 확인 및 자문 : 가맹거래사 (인)
